

알고 나면 두렵지 않은 세무조사(1)

–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

마 전 제주 지역에서 농업법인의 세제혜택을 악용한 목 적외 사업이 공공연히 추진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제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설립된 농업법인들의 74%가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조세 탈루 의혹이 있는 기업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비정기조사(수시조사)라 하며,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나 탈루 의혹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세 탈루와 관계없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정기조사라 한다. 간혹,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발생하는 언론 보도를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조사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세수가 부족하여 정기조사도 강도 있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당분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대상기업선정부터 절차, 대응법, 예방법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임기완
공인회계사 / 세무사
진일회계법인 이사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누구라도 대상자

정기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창업 후 4과세기간(4년) 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5년이 지났다면 언제라도 정기조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갑작스럽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당황할 필요가 없다. 또, 매출액 5천억 이상의 대기업은 매 4년마다, 매출액 1천억~5천억 규모의 기업은 4~5년에 1번씩 선정될 수 있는 반면, 매출 50억 미만의 영세기업은 통상 서면조사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정책 기준 하에 지방국세청의 조사계획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통상 20~30일(조사기간은 대상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량 진행된다. 또, 법정사유를 제외하고 같은 세목 및 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중복조사는 하지 않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한다.

세무조사의 절차와 결과 통보

일선 세무서에서 나온 조사관은 증명서류, 장부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직원이나 임원 등을 면담하여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하 ‘납세자’) 중 매출규모가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내부에 조세업무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 등 주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응을 하게 되며, 이렇게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 조사관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사실의 입증을 위해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까지 요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끝나게 되면 결과가 통지되고 30일 경과 후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 결과를 인정하면 고지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9개월의 한도 내에서 납부의 연장도 가능하다.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 상 세무조사 종결 시 결과 통지 의무규정이 있고, 통지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결과가 통지되고 이에 반발한 납세자가 ‘조세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세무조사 종결단계에서 과세관청(세무서)과 납세자간 최종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작년 국회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조세불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니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적극적으로 준비, 대응한다면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조세 징수를 피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양계